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741호 2020. 10. 15.(목)

【공 고】

제2020-2031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 3
제2020-2085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제2020-2096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제2020-2105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휴양사업소 제2020-13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휴양사업소 제2020-14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고 시】

제2020-173호 도시계획시설(사곡면 소로2-계실2호외 5개소, 주차장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60
제2020-17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신설: 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6
제2020-17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고덕교) ····· 69
제2020-17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70
제2020-179호 도로명 부여 고시 ····· 72
제2020-1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외 10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76
제2020-1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87
제2020-18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91
제2020-18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94

회 람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2567)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20-2031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폐기 및 신조 사유 : 민원증명발급기 교체 및 신규 설치

2. 사용개시일 : 2020. 10. 15.

3. 폐기 및 신조 공인 내역

소 관 부서명	공인명	구분	인 영	규 격 (cm)	사 유	비 고
신풍면	공주시 신풍면장인 민원실전용	폐기		2.1×2.1 (정방형) / 전서체 /우레탄	노후화에 따른 제증명발급기 교체	
	공주시 신풍면장인 제증명발급전용	신조		2.1×2.1 (정방형) / 훈민정음체 /우레탄	〃	

공주시 공고 제2020-2085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남도내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 축사 입지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 사전 예방이 필요함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체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피해(악취, 지가하락 등)에 대한 보상과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

○ 기타 법령 폐지 및 신규 제정에 따른 법규명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정의 추가(안제2조 제9호)

-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함

○ 법령 신설에 따른 신설 법규명 반영(안제2조 제7호)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농어촌정비법」

❍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내용 반영(안제3조 및 별표 1)

-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일 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600m 이내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근거 마련(안제13조)

-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3.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1.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환경보호과(환경시설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539 FAX : 041-840-2319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 (☏ 041-840-853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1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10조제4항 중 “7일 까지”를 “7일까지”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부칙 제8조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기존 대지 및 인접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일부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구역(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포함)에서 기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개축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개정 전)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않음)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 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젖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정 후)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제 한 구 역</th></tr>
<tr><td rowspan="7">전 부
제한구역</td><td colspan="2">수도법 제7조</td><td>상수원보호구역</td></tr>
<tr><td colspan="2">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td><td>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td></tr>
<tr><td colspan="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td><td>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대책지역 중 1권역은 신규 입지는 허용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2">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td><td>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td></tr>
<tr><td colspan="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td><td>수변지역</td></tr>
<tr><td colspan="2">습지보전법 제13조</td><td>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td></tr>
<tr><td col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td><td>도시지역</td></tr>
<tr><td rowspan="2">일 부
제한구역</td><td rowspan="2">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td><td>도시 및 주거밀집 지역</td><td>○ 전부제한구역의 도시지역의 경계선과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700m 이하 지역
- 소, 젖소 : 1,000m 이하 지역
-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500m 이하 지역</td></tr>
<tr><td>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td><td>○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 지역
- 소, 젖소,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말 : 600m 이하 지역</td></tr>
</table>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나.「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다.·라. (생 략) 8.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다.·라.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① ~ ③ (생 략) 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지 서로 다음 달 7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7일까지 ---------- 제13조(주변지역의 지원 등) ① 시

	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지역(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소재한 해당 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 제14조 (생 략)	제14조·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20-2096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유해동물 포획에 따른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의결(2020.5.11.)하고 각 지자체별 포획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및 업무에 반영토록 권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허위청구 및 수령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시 허위 신고(청구)를 통한 보상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보상급 지급 시 포획사실 확인절차 강화 (안제9조 제2항)

- 사체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사체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 페인트 등을 이용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토록 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허위 신고(청구)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제9조 제3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청구)하여 지급된 포획보상금을 환수 토록 하고,
- 피해방지단 제명 및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활동을 제한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0. 15. ~ 2020. 11. 5.(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10. 15. ~ 2020. 11. 5.(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연락처 : 041-840-8522, FAX : 041-840-2329

5. 기 타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 (☏ 041-840-8522)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32552)

└ FAX : 041-840-232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획보상금 등의 지원 및 환수)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획보상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페인트 등을 이용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게「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5년간 피해방지단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획보상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2020-2105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부 표준조례를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근거를 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안 제2조)

나. 이주대책 수립대상(안 제3조)

다.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안 제4조)

라.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안 제5조)

마.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6조)

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7조)

사.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의 부과.징수(안 제8조~제9조)

아. 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안 제10조)

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안 제11조~제19조)

차.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안 제20조)

카. 주변영향지역 지원(안 제21조)

타.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안 제22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11. 5.(21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공주시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 공주시장(자원순환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840-8571 FAX : 041-840-2438

6.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 제 호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조성면적 7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4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5.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시설은 시장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2장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단가와 시설부지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시설부지 매입단가 :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시설부지 면적 :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방식에 의한 배출량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산정기준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톤~10톤/일 경우 :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톤~29톤/일 경우 :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톤~49톤/일 경우 :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톤~99톤/일 경우 :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일 경우 : 0.8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 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7. 납부 예정일 및 납부 방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1개월 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법 제8조에서 정하는 가산금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라 가산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폐기물 처리수수료(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3.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재원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 그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한다.

제12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지원
2. 주민 건강진단비 지원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지방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5조(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
2.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면·동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

다. 환경 및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구성 비율은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과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2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대표 중 특정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각 3명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주변영향지역 지원 대상사업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조(수수료의 예금에 대한 특례) 기금을 처음 설치한 연도에는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징수한 수수료 총액의 10%를 일시에 별도계좌에 전입할 수 있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5조제2호 관련)

1.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요면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톤	1기 기준 4,000㎡이하
	100~300톤/일	30㎡/톤	2기 기준 3,000~9,000㎡ 이하
	300~500톤/일	20㎡/톤	2기 기준 6,000~10,000㎡ 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2~4기 기준 7,500~15,000㎡ 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	-
	500톤/일 초과	500㎡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2.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적용

3.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1) + 주민편익시설 면적(2) + 주변녹지대 면적(3)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계획서(제8조제1항 관련)

<table>
<tr><td rowspan="6">사업현황</td><td>사 업 명</td><td colspan="6"></td></tr>
<tr><td>위 치</td><td colspan="6"></td></tr>
<tr><td>면 적</td><td colspan="2">㎡</td><td>사업기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td><td colspan="2">원/㎡</td></tr>
<tr><td colspan="4">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td><td colspan="2">명</td></tr>
<tr><td>예정주택 현 황 (세대)</td><td>합 계</td><td>일반주택</td><td>다세대</td><td>아파트</td><td>상가</td><td>공공기관</td><td>그 밖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시 행 자</td><td>회 사 명</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폐 기 물 발 생 예 상 량</td><td rowspan="2">합 계 (톤)</td><td colspan="5">생활폐기물</td><td colspan="4">사업장폐기물</td></tr>
<tr><td>소계</td><td>가연성 폐기물</td><td>불연성 폐기물</td><td>유기성 폐기물</td><td>재활용 폐기물</td><td>소 계</td><td>일 반 폐기물</td><td>지 정 폐기물</td><td>건 설 폐기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납부계획 및 방법</td><td>납부금액</td><td colspan="8">금 원 (금 원)</td></tr>
<tr><td>납부기한</td><td colspan="8">년 월 일 까지
※ 준공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균등 분할</td></tr>
<tr><td rowspan="2">납 입 예정일자</td><td>납입횟수</td><td colspan="2">1회</td><td colspan="2">2회</td><td colspan="3">3회</td></tr>
<tr><td>총 회</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able>

상기와 같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기금관리대장(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연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4호 서식]

기금출납부(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입액 (A)	지출액 (B)	잔 액 (A-B)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공주시 휴양사업소 공고 제2020-13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옥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응모자격, 위탁운영 시 위탁 절차 및 방법의 적용 규정 등을 규정(안 제5조)

○ 사용자의 손해배상 방법 신설(안 제10조 제2항)

○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 신설(안 제11조 제2항)

○ 수탁자의 마케팅 및 홍보활동 시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신설(별표2 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휴양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휴양사업소(한옥마을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 우편번호 : 32535
전화 : 041-840-8902 / FAX : 041-881-917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관리 등)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1일"을 "한옥마을의 1일"로, "14:00"을 "15:00"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

제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보험가입의무를 진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관리 등)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제6조(사용료 등) ① 한옥마을의 1일 --- 15:00----------

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10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양도금지) 제6조----------.
제11조(손해배상 등)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제6조----------.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신 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보험가입) ---------- ---------- ---------- ----------.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보험가입의무를 진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별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면율	
	단체숙박동	개별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센트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20퍼센트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6.「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7.「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8.「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 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퍼센트	20 퍼센트
9.「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관광시설 공동 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0.「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1.「공주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별표 3〕**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개정안

[별표 1] **시설사용료**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감면율	
	단체숙박동	개별숙박동
1.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2. 수학 여행단(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기관·단체 공문접수 시)	20퍼센트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20퍼센트
5.「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6.「주민등록법」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7.「공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공주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20퍼센트
8.「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가입된 사람 중 온누리 공주시민증을 제시한 경우	20 퍼센트	20 퍼센트
9.「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 관광시설 공동 이용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부여군·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0.「공주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1.「공주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상생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20퍼센트
12. 수탁자가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시	20퍼센트	2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관련)**

공주시 휴양사업소 공고 제2020-14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옥마을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관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한옥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예약 시간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한옥마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안 제13조~제16조)

○ 수탁자의 운영지원, 민·형사상 책임, 양도금지, 보험가입 규정(안 제17조~제20조)

○ 사무편람, 협약이행,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인수인계 규정(안 제21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휴양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휴양사업소(한옥마을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 우편번호 : 32535

전화 : 041-840-8902 / FAX : 041-881-9172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

규칙 제 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변경 신청) ① 공주시 한옥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 및 취소 사실을 신청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취소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 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일지) 관리자는 일일업무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는 업무일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권의 검인)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검인부(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 사용권을 발매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증) 시장은 관리공무원에 대하여「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시설의 관리자와 수탁운영자는 전기, 액화석유가스,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개별 예약) ① 숙박 예약 및 바비큐장 예약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각장애인등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다목적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되, 숙박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숙박예약은 숙박 예정월의 전월 첫날 14:00부터 실시하고,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평일 14:00로 한다.

제10조(단체 예약) 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주시 주최、주관 행사로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3. 80명이상 단체숙박으로 해당 단체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1조(다목적실 사용시간) ① 다목적실 사용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숙박자가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당일 사용은 1회로 한정하며, 당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09:00부터 12:00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2조(바비큐장 사용시간) ① 바비큐장 이용은 당일 숙박자에 한하며, 숙박당일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바비큐장 사용은 1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개월 전까지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주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한옥마을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④ 한옥마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시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전대(轉貸)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1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제24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옥마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 시설의 소유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5조(인수인계) 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종료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인수인계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임시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임시관리인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시가 보관한다.

⑤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입회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인수인계가 끝난 즉시 인수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인수인계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⑦ 인수자는 인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옥마을 행사 숙박 이용권을 구매한 고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변경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시설사용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 및 취소 사실을 신청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취소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변경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 제7조에 따른 ---------- 따라 ----------.
제9조(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	제9조(개별 예약) ① 숙박 예약 및 바

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비큐장 예약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각장애인등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신 설>	② 다목적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되, 숙박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숙박예약은 숙박 예정월의 전월 첫날 14:00부터 실시하고, 첫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평일 14:00로 한다.
<신 설>	제10조(단체 예약) 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해당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주시 주최·주관 행사로 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3. 80명이상 단체숙박으로 해당 단체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 설>	제11조(다목적실 사용시간) ① 다목

	적실 사용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숙박자가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당일 사용은 1회로 한정하며, 당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09:00부터 12:00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바비큐장 사용시간) ① 바비큐장 이용은 당일 숙박자에 한하며, 숙박당일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바비큐장 사용은 1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신 설>	제13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하고,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개월 전까지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이

	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주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한옥마을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④ 한옥마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시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한옥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전대(轉貸)하거

	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신 설>	제20조(수탁자의 보험가입)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2조(협약이행)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옥마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 시설의 소유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위

	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 설>	제25조(인수인계)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종료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인수인계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인수인계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임시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임시관리인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

	하고, 나머지 1부는 시가 보관한다. ⑤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입회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하며, 입회자는 인수인계가 끝난 즉시 인수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⑥ 인수인계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⑦ 인수자는 인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공주시 고시 제2020-173호

도시계획시설(사곡면 소로2-계실2호 외 5개소, 주차장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사곡면 소로2-계실2호 외 5개소, 주차장 1개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소로2-계실2호	계실리 365-16번지외 12필지	13 / 1,245	L=146.8m B=8m	인가일~ '22.12.31	
	소로2-계실3호	계실리 135-1번지외 6필지	7 / 642	L=74.8m B=8m	인가일~ '22.12.31	
	소로2-계실4호	계실리 142번지외 12필지	13 / 1,708	L=214.4m B=8m	인가일~ '22.12.31	
	소로3-계실1호	계실리 360-5번지외 7필지	8 / 798	L=92.2m B=6m	인가일~ '22.12.31	
	소로3-계실2호	계실리 140번지외 12필지	13 / 486	L=81.3m B=6m	인가일~ '22.12.31	
	소로3-계실3호	계실리 산3-5번지외 9필지	10 / 682	L=110.9m B=6m	인가일~ '22.12.31	
	주차장(1)	계실리 357-3번지외 7필지	8 / 661	661㎡	인가일~ '22.12.31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로2-계실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5-16	대	214	214	공주시	-	
2		365-17	대	91	91	안**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5-21	
3		365-14	대	256	256	이** 외 1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5-1	
4		365-21	대	105	105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8	
5		365-20	대	13	13	허**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92	
6		365-22	대	136	136	공주시	-	
7		358-4	대	129	129	복** 외 2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황금길 45	
8		133-36	대	8	8	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177,113동 901호(도안동,도안신도시수목토아파트)	
9		552-16	도	619	203	국토 교통부	-	
10		133-37	대	1	1	공주시	-	
11		133-30	대	55	55	충청남도	-	
12		357-6	대	31	31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8	
13		357-5	대	64	3	공주시	-	
계				1,722	1,245			

<소로2-계실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4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5-1	잡	99	4	계실리 마을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3-10	
15		135-2	도	53	12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16		550-2	도	1,113	154	국토 교통부	-	
17		178-2	도	50	50	신**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8	
18		572	구	555	372	농림축산 식품부	-	
19		243-14	답	98	46	공주시	-	
20		177-2	도	267	4	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즈시 콜드워터캐년가 1223	
계				2,235	642			

<소로2-계실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2	대	546	73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2	
22		138-1	대	387	37	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3	
23		139-1	대	152	9	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4	
24		550-2	도	1,113	143	국토 교통부	-	
25		139	대	717	9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17-61 대성빌라 102	
26		140	대	1,362	382	정**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7	
27		168-2	대	747	50	백**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4	
28		168-1	대	1,643	80	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75-20	
29		169-1	전	803	226	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75-20	
30		170	전	1,772	342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6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31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4	대	1,312	215	장**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4	
32		185	대	384	3	박**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19번길 3, 303호	
33		산3-5	임	1,983	139	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읍 산성동 119	
계				12,921	1,708			

<소로3-계실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34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0-5	대	558	123	공주시	-	
35		552-16	도	619	225	국토 교통부	-	
36		363-2	대	1,173	232	공주시	-	
37		360-6	대	58	58	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석로 126번길 2 202호(가좌동, 한양빌라)	
38		365-19	대	49	49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0	
39		133-35	대	20	20	임**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3-18	
40		359-1	대	54	54	공주시	-	
41		365-18	대	37	37	안**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5-21	
계				2,568	798			

<소로3-계실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2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0	대	1,362	44	정**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7	
43		168-1	대	1,643	9	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길 75-20	
44		550-2	도	1,113	197	국토 교통부	-	
45		168-2	대	747	24	백**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44	
46		139	대	717	13	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17-61 대성빌라 102	
47		176-1	대	613	15	신**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37	
48		138-2	대	410	48	민** 외 1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728, 8층(전민동)	
49		176	대	362	23	박**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음촌길 10-1	
50		137	대	840	38	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5	
51		177-1	전	559	44	계실리 마을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77-1	
52		177-2	도	267	29	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즈시 콜드워터캐년가 1223	
53		136-1	대	334	1	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82, 14동 1405호(둔산동, 수정타운)	
54		178-2	도	50	1	신**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38	
계				9,017	486			

<소로3-계실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5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산3-5	임	1,983	43	권**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19	
56		190	대	864	68	조**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0	
57		184	대	1,113	102	국토 교통부	-	
58		550-2	도	1,312	201	장**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4	
59		190-1	대	911	27	정**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6-1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60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3	대	463	70	김** 외 1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86-7	
61		182-1	전	1,324	19	조**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0 현대아파트 111-1503	
62		173	대	992	74	조**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0 현대아파트 111-1503	
63		182-2	도	157	73	조**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173	
64		174-1	대	383	5	조**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10 현대아파트 111-1503	
계				9,502	682			

<주차장(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65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57-3	대	81	47	공주시	-	
66		545-16	천	4,132	20	국토교통부	-	
67		552-15	도	97	11	국토교통부	-	
68		357-9	대	58	56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8	
69		357-8	대	2	1	공주시	-	
70		552-16	도	619	90	국토교통부	-	
71		358-5	대	41	41	복** 외 2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황금길 45	
72		357-7	대	395	395	이**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양촌길 8	
계				5,425	661			

공주시 고시 제2020-175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신설 : 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동현동 산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신설: 공공청사, 도로, 공공공지, 유수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5,000) : 게재생략

3.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도 (1/1,500) : 게재생략

[붙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중로	1	동현1	20	집산도로	477	동현동 1-5	동현동 646-1	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2	동현1	15~24	국지도로	858	중로1-동현1	중로1-동현1	일반도로	-	-	일부구간 도로사면폭 6~9m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 1-동현1	■ 도로신설 - B=20m, L=477m	■ 공공청사로 원활한 진출을 위한 기존 현황도로 확장
-	중로 2-동현1	■ 도로신설 - B=15~24m, L=858m	■ 공공청사 신설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 등을 위한 도로 신설

2)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5	공공공지	동현동 산1-1 일원	-	증)27,358	27,358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A=27,358㎡	■ 비탈면 재해대책, 경관유지 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	공공청사	-	동현동 3-20 일원	-	증)74,448	74,448	-	○ 건폐율 : 20%이하 ○ 용적률 : 80%이하 ○ 높이 : 4층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9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A=74,448㎡	■ 동현동 일원에 공공기관 등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세종시와 행정기능분담 및 상생발전 도모

4)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유수지	저류시설	동현동 105-2 일원	-	증)2,511	2,511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2	유수지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A=2,511㎡	■ 저류시설을 확보하여 집중호우 및 침수예방 등을 도모

공주시 고시 제2020-177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고덕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연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 업 량		정비계획	비고
	구 분	명 칭				시작지점	끝나는지점	연장(m)	폭(m)		
1	소교량	고덕교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417	678-7	57	7.0	'20년 이후	신규

※ 사업 시기, 예산,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4.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0. 10. 15.

5. 문 의 처 : 충남 공주시 건설과(☏041-840-8668)

공주시 고시 제2020-17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검상동 326번지 외 4필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인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61), 자원순환과(☎041-840-85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검상동 326번지외 4필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 명칭 : 검상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업부지 면적(㎡)	사업 내용	비 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3,300	○ 검상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식 - 건축면적 : 1,315.83㎡ - 연면적 : 1,951.87㎡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자원순환과장)

마.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소각장	1,315.83	1,915.87

바. 사업기간

○ 2020.10(인가일)로부터 ~ 2020년 6월 30일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아래와 같음

수용 ·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3,300	3,300						
1	검상동	326	잡종지	1,360	1,360		공주시				
2	검상동	326-1	잡종지	684	684		공주시				
3	검상동	326-2	잡종지	533	533		공주시				
4	검상동	327-1	잡종지	517	517		공주시				
5	검상동	722-4	잡종지	206	206		공주시				

공주시 공고 제2020-179호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 주 시 장

1. **고시일** : 2020. 10. 8

2. **고시방법** : 공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절차**

주민의견수렴공고	경과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도로명부여 고시
14일 이상		생략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		심의종료 10일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1-840-8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부여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쌍신생태공원자전거길	길	20	3	1.7	도면 참조	신관동 582번지	쌍신동 403번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예비)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부여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의당면	정안천자전거길	길	20	3	4.38	도면 참조	신관동 582번지	쌍신동 9999-6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도로명부여조서 및 현황도】

행 정 구 역	(예비)도 로 명	위계	기초 간격 (m)	폭 (m)	길이 (m)	중심선	도로구간		부여사유
							기점	종점	
신관동	금강신관공원자전거길	길	20	3	2.48	도면 참조	신관동 553번지	신관동 553번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2459 충청남도 토지관리과-9485



공주시 고시 제2020-1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외 10개)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공주시 신관동 및 유구읍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외 10개소)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당초 / 변경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중로2-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01-1번지외 14필지	15 / 2,224	L=158m B=15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5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74-44번지외 11필지	12 /1,931	L=248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7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49-6번지외 5필지	6 / 916	L=117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7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44번지외 9필지	10 / 1,231	L=266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종류	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기간 당초 / 변경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소로2-7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32-32번지외 7필지	8 / 1,294	L=127.7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7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540-16번지외 15필지	16 / 1,283	L=162.7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7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6-3번지외 13필지	14 / 989	L=140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89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관동 272-24번지외 13필지	14 / 834	L=105.2m B=8m	2020.05.15.~2021.05.14. 2020.05.15.~2023.12.31	
	소로2-7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석남리 214-20번지외 3필지	4 / 382	L=41m B=8m	2020.04.16.~2021.04.15. 2020.04.16.~2023.12.31.	
	소로3-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석남리 52-4번지외 8필지	9 / 363	L=51m B=6m	2020.04.16.~2021.04.15. 2020.04.16.~2023.12.31.	
	소로3-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석남리 182-7번지외 5필지	6 / 552	L=76m B=6m	2020.04.16.~2021.04.15. 2020.04.16.~2023.12.31.	

2.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성　　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중로2-7>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01-1	임	601	1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신관동	201-4	임	365	365	백제새마을금고	공주시 웅진로 201	16/365				
						전주이씨 상산군파 충의공종중	공주시 요동길 65	349/365				
3	신관동	201-3	임	788	34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신관동	558-9	도	63	6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신관동	192-19	임	92	9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6	신관동	559-10	구	117	117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7	신관동	194-10	답	42	42	강순옥	대전시 서구 삼천동 991 국화아파트 305-1306					
8	신관동	560	도	556	12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9	신관동	180-12	답	130	13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0	신관동	180-9	답	554	554	김성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261					
11	신관동	179-16	대	3	3	임대범	공주시 신관동 179-5					
12	신관동	179-8	대	98	9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3	신관동	179-15	대	118	118	김용태	공주시 공주대학로 35		백제새마을금고	웅진로 201 35(신관동)	근저당	
14	신관동	179-13	대	36	36	송혁상	공주시 신관동 255-3 주공아파트 105-406					
15	신관동	179-14	대	123	123	김종철	공주시 신관동 179-2					

<소로2-5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47-44	도	100	2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신관동	247-28	답	22	1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신관동	247-17	전	256	25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신관동	537-3	천	10,961	733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	신관동	17-8	답	133	133	박태균	세종시 새롬남로 98, 904동 1701호(새롬동 새뜸9단지)		우성농업협동조합	우성면 동대리길 78	근저당	
6	신관동	17-5	답	32	3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7	신관동	17-6	답	240	240	박태균	세종시 새롬남로 98, 904동 1701호(새롬동 새뜸9단지)		우성농업협동조합	우성면 동대리길 78	근저당	
8	신관동	18-5	답	263	263	이순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726-1	1/5				
						이선희	논산군 논산읍 부창리 216-1	1/5				
						이정희	대전시 서구 변동 16-15 태산빌라 301	1/5				
						이복희	공주시 교동 175-7 대우아파트 104-501	1/5				
						이옥희	서울시 중랑구 묵동 20 신내대림아파트 504-906	1/5				
9	신관동	18-7	전	116	116	이은창	충남 공주시 반죽동 308					
10	신관동	18-3	전	8	8	윤창원	충남 공주시 중동 258-9					
11	신관동	14-4	전	460	90	김용석	공주시 옥룡동5 금강빌라 1동 507호	3/16	공주축산업협동조합	신관동 601-8	근저당	
						고경석	공주시 신관동 613-1 현대아파트 201-104	2/16				
						신현숙	공주시 우금티로 616 (금학동)	3/16				
						이갑열	공주시 흑수골길 54 (신관동)	5/16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번영1로 42 (신관동)	근저당	
						신현숙	공주시 우금티로 616 (금학동)	3/16				
12	신관동	13-2	답	371	2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소로2-7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49-6	답	103	103	오윤식	공주시 신관동 249-2		웅진새마을금고	산성동 170-10	근저당	
2	신관동	249-13	답	105	105	전규흥	공주시 옥룡동 53-5					
3	신관동	248-1	도	223	22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신관동	537-3	천	10,961	126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	신관동	264-5	답	167	167	공주농업협동조합	공주시 금성길 19(금성동)					
6	신관동	264-6	답	192	192	임영옥	공주시 신관동 180-5 대동다숲아파트 101-1204		우리은행 (공주지점)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	

<소로2-74>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44	전	5,015	11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신관동	245-1	답	150	150	오순자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12-14	833/1924				
						김계순	사곡면 신영리 5-26	562/1924				
						이은숙	우성면 상서리 442-4	529/1924				
3	신관동	537-3	천	10,961	1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4	신관동	246-9	전	452	452	반우백	공주시 신관동 258	1/2				
						조현오	공주시 신관동 613-1 현대아파트 202동 506호	1/2				
5	신관동	247-21	답	117	117	양창애	공주시 신관동 246-2	1/2				
						김기호	공주시 옥룡동 103 주공아파트 206-1102	1/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신관동	265-35	답	28	28	백승근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880 열매마을ATP 6단지 606-802					
7	신관동	265-32	답	166	16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8	신관동	265-36	답	119	119	김광갑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279					
9	신관동	265-30	답	39	3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0	신관동	31-16	답	24	2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소로2-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32-32	답	51	51	오창순	공주시 신관동 24-64 주공아파트 308-404					
2	신관동	32-22	전	178	178	이갑식	공주시 신관동 342					
3	신관동	32-16	전	310	310	김도영	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7, 714동 1302호	1/4				
						박중순	공주시 신관동 14	1/4				
						구상록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235	1/4				
						김종권	공주시 옥룡동 8-2 금강아파트 2-904	1/4				
4	신관동	537-3	천	10,961	269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5	신관동	17-12	답	148	148	박태균	세종시 새롬남로 98, 1701호(새롬동, 새뜸9단지)					
6	신관동	26-5	임	21	21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수정아파트에이-301					
7	신관동	17-10	전	138	138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수정아파트에이-301					
8	신관동	26-3	임	455	179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수정아파트에이-301					

<소로2-76>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540-16	도	6,353	4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2	신관동	24-162	임	254	254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1,에이동301호(여의도동)					
3	신관동	산5-8	임	70	70	김용현	공주시 신금1길 7, 3층 302호(신관동)		공주동부신용협동조합	번영1로 179 (신관동)	근저당 지상권	
4	신관동	24-160	대	104	104	이정숙	공주시 일신역길 14-1(신관동)					
5	신관동	산5-12	임	6	6	조성옥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1길 49-39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길 19 (금성동)	근저당권	
6	신관동	24-159	임	7	7	고애숙	연기군 남연 양화리 893					
7	신관동	산5-10	임	165	165	이영석	공주시 옥룡동 393-25					
8	신관동	272-20	임	4	4	김명희	공주시 이인면 이곡리 129-2					
9	신관동	272-21	임	4	4	박미정	경기도 하남시 마사강변북로 65, 1001동 1202호(선동)	2/4				
						임재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30가길 15, 201호(목동,삼성타운)	1/4				
						임보라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101동 710호(개봉동,삼호아파트)	1/4				
10	신관동	산5-13	임	7	7	윤평순	공주시 중동 57-2					
11	신관동	272-7	임	314	31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2	신관동	272-19	임	312	3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3	신관동	272-17	임	51	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4	신관동	272-18	임	55	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신관동	272-14	임	316	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6	신관동	272-16	임	810	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소로2-78>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6-3	임	455	276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에이동 301호					
2	신관동	25-10	대	89	89	최동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수정아파트에이-301					
3	신관동	24-137	전	2	2	정순은	공주시 한적2길 51-14, 108동 1303호(금흥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길 19 (금성동)	근저당	
4	신관동	25-12	전	124	124	이형섭	공주시 번영1로 194-7, 106동 303호(신관동)		국민은행 (대전은행동지점)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5	신관동	24-169	전	11	11	정순은	공주시 한적2길 51-14, 108동 1303호(금흥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길 19 (금성동)	근저당	
6	신관동	24-141	대	105	10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7	신관동	24-164	전	19	19	곽인순	공주시 신관동 24-9					
8	신관동	24-168	전	67	67	임선자	공주시 우성면 단지문화마을길 12		우성농업협동조합	우성면 동대리길 78	근저당 지상권	
9	신관동	24-165	전	78	78	이은미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330-1	1/2				
						이은장	공주시 금학동75-8 영우마을 202-107	1/2				
10	신관동	24-167	전	29	29	김혜경	세종시 보듬3로 74, 1202동 205호(아름동,범지기12단지)		농협은행 (공주대지점)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11	신관동	24-152	대	88	88	조복예	공주시 신관동 24-36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근저당	
12	신관동	24-148	대	38	3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3	신관동	24-166	전	33	33	양경숙	공주시 번영1로 194-7, 110동 601호(신관동)					
14	신관동	24-146	전	30	30	차광원	공주시 중동 147-151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4692446635/40570902900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3956220/863210700				

<소로2-89>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 고
	동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272-24	임	1	1	김명희	공주시 이인면 이곡리 129-2					
2	신관동	272-22	임	30	30	유형철	공주시 중동 369-3					
3	신관동	272-25	임	165	165	박미정	경기도 하남시 마사강변북로 65, 1001동 1202호(선동)	2/4				
						임재진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30가길 15, 201호(목동,삼성타운)	1/4				
						임보라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101동 710호 (개봉동,삼호아파트)	1/4				
4	신관동	272-23	임	2	2	김명희	공주시 이인면 이곡리 129-2					
5	신관동	541-8	구	16	16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	신관동	271-2	전	95	95	김광수	공주시 신관동 273					
7	신관동	270-10	답	35	35	신동열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414					
8	신관동	270-6	답	195	19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9	신관동	542	도	486	22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	신관동	284-2	도	20	6	황현익	공주시 신관동 258-4					
11	신관동	283-2	대	159	15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2	신관동	285-5	도	58	58	조원호	공주시 웅진동 242-2 청실아파트 101-606					
13	신관동	283-4	대	2	2	김종흥	공주시 일신역길 21-2(신관동)		공주농업협동조합	금성동 21-5	근저당	
14	신관동	286	대	9,414	48	주공아파트 대지권설정	공주시 신관동 286					

<소로2-7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14-17	대	184	151	공	공주시	
2		214-22	대	64	64	남궁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21	
3		214-20	대	146	146	남궁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21	
4		438	도	4,235	21	국	국토교통부	
계				4,629	382			

<소로3-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52-21	도	183	40	윤증현	서울 강동구 길동43 신동아아파트 31동 에이804호	
2		52-18	대	110	3	공	공주시	
3		52-26	대	180	40	이희문 외2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견훤로100 103동1106호 (남노송동,기린봉아파트)	
4		52-14	대	25	25	윤증현	서울 강동구 길동43 신동아아파트 31동 에이804호	
5		52-23	대	134	134	김연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81	
6		52-28	대	52	52	윤증현	서울 강동구 길동43 신동아아파트 31동 에이804호	
7		52-16	대	43	43	공	공주시	
8		52-25	대	1	1	김연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81	
9		53-17	대	213	25	공	공주시	
계				941	363			

<소로3-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182-7	대	9	9	김현수	녹천리 26-12	
2		182-9	대	186	186	황의돈	천안시 성정동 823 선경아파트 3-1003	
3		182-8	대	24	24	신명수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128-17	
4		214-24	대	152	152	황명규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94	
5		214-23	대	146	146	황의돈	천안시 구성동 475-14	
6		214-26	대	750	35	송기성	석남리 203-2	
계				1,267	552			

공주시 고시 제2020-18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도로명주소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75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 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194-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75	2020 1015	직권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후공문발송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3-1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 마곡사로530-13	2020 1015	신규	2010 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로 부여	
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106-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 마곡사로 854	2020 1015	신규	2010 0112	정안면에서 마곡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과 마곡사의 명칭을 활용하여 정안마곡사로로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단지리 57-2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707	2020 1015	직권	2009 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5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19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4-57 (상왕동)	2020 1015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260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2 (상왕동)	2020 1015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205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7-59 (상왕동)	2020 1015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48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8-13 (상왕동)	2020 1015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회학리 354-17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말구리길 3	2020 1015	신규	2011 0506	마을 지형이 말의 아가리와 같다하여 말구리길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동 376-2	충청남도 공주시 무릉중말길 10 (무릉동)	2020 1015	신규	2011 0506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월곡리 43-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밀머리길 13	2020 1015	신규	201 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111-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뱅이길 7-5	2020 1015	직권	201 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153-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서당길 68	2020 1015	직권	201 001 12	도로 끝 지점에 서당이 있다하여 서당의 명칭을 활용하여 서당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선학리 24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선학리길 123-1	2020 1015	직권	201 001 12	선학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 92-1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양달뜸길 41	2020 1015	신규	201 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1187-1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어사길 292	2020 1015	신규	201 001 12	이도령이 장원 급제후 지나갔던 길이라는 뜻의 어사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외송1길 3	2020 1015	신규	201 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리 582-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입석절골길 62	2020 1015	신규	201 001 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후, 다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495-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자연예술길 1	2020 1015	신규	201 001 12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도자기, 미술등 예술쪽에 종사하고 있어 자연예술길로 부여	
2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330	충청남도 공주시 장골길 7 (금흥동)	2020 1015	신규	201 001 12	골이 길다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253-2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정곡길 9	20201015	신규	20100202	지금도 큰 마을인데 조선시대 때는 상당히 붐볐던 옹기점이 있었다하여 정곡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258-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73	20201015	신규	20100202	정안면의 중심이 되었던 옛길로 중앙 자를 활용하여 정안중앙길로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498-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동2길 60-2	20201015	신규	20100112	가을때문에 부촌이 된 마을이고 풍류도 있고 해서 추동이라 불렀다 하며, 일련번호 부여방식과 혼합 활용 추동1길로 부여	

공주시 고시 제2020-18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78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의당면 청룡리 101-8,101-2, 102-6,102-7,573-1	의당면 청룡리 101-2,102-6, 102-7,573-1	의당면 연수원길 178	의당면 연수원길 178	9.23	건물번호분할 변경신청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2	의당면 청룡리 101-8,101-2, 102-6,102-7,573-1	의당면 청룡리 101-8	의당면 연수원길 178	의당면 연수원길 176	9.23	건물번호분할 변경신청	

공주시 고시 제2020-18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시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로 474 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1	반포면 학봉리산18	반포면 동학사1로 474	10.15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2	공주시 금흥동 418	공주시 의당로 114-16	10.15	허가과-55558(20.10.05) 건물물대장말소에 의한 폐지
3	반포면 견동리316	반포면 국사봉로 56-3	10.15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4	탄천면 장선리145	공주시 산디길 28-64	10.15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
5	탄천면 장선리257	공주시 쌍봉길 18-3	10.15	2020 일제조사로 건물번호폐지